2026년도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계획

2026. 5.

고용노동부

목 차

Ⅰ. 목 적 ····· 1

Ⅱ. 그간의 경과 ····· 1

Ⅲ. 2026년도 포상개요 ····· 1

Ⅳ. 포상자격 및 추천제한 기준 ····· 2

Ⅴ. 포상후보자 추천 및 심사기준 ····· 5

Ⅵ. 포상후보자 확정 및 포상실시 ····· 7

Ⅶ. 추진일정 ····· 8

【붙임1】 노사문화유공 포상추천서 ····· 9

(구비서류1) 사업체 개요서

(구비서류2) 포상후보자 공적조서

(구비서류3) 포상후보자 공적개요서

(구비서류4) 포상후보자 세부공적내용

(구비서류5) 포상후보자 이력서

(구비서류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2】 공적사항 조사의견서 ····· 18

【붙임3】 노사문화유공 심사기준 ····· 19

【붙임4】 포상후보자 추천순위 및 심사점수표 ····· 20

【붙임5】 노사문화유공 공고문 ····· 21

Ⅰ 목 적

□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한 **노동자대표 및 사용자, 발전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을 통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

* (추진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 차별없는 일터조성, 일·생활 균형 실현, 원·하청 상생, 고용유지 등 **노사협력 우수사례를 집중 발굴·포상**

Ⅱ 그간의 경과

□ 2008년부터 노사문화 유공자 정부포상 → 2025년까지 총 834명 포상

계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총리 표창	장관 표창
834	101	94	154	151	334

□ 2025년에는 '금탑산업훈장' 포함 총 41명 포상

계*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총리 표창	장관 표창
	금탑	은탑	동탑	철탑				
41	1	1	1	1	4	9	9	15

* 노동자대표(20명, 48.8%), 사용자(21명, 51.2%)

Ⅲ 2026년도 포상개요

【 운 영 방 향 】

◈ 현장에서 **협력·상생의 노사문화 가치 아래** 좋은 일자리 창출, 차별없는 일터 조성, 일·생활 균형 실현 등에 기여한 자를 적극 발굴

- 특히, 無노조**참여적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有노조**대립적 노사관계 극복**, 사용자**원·하청 상생협력**, 노사공동**고용위기 극복**에 기여한 자 **중점 발굴**

◈ **엄격한 공적 검증·심사**를 통한 **포상의 영예성·신뢰성 제고**

1 포상대상

○ **(노동자대표·사용자)** 좋은 일자리 창출, 차별 없는 일터조성, 일·생활 균형실현, 원·하청 상생 및 고용유지 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한 **노동자대표**(기업 노조대표, **노사협의회** 노동자대표) **및 사용자**

○ **(발전유공자)** 학술·언론·문화·예술분야 등에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자**(학계·사회단체 등의 민간인 등)

※ 대상별 포상규모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2 추천서 접수기간: '26. 6. 4.(목) ~ 7. 10.(금) 까지

3 포상규모(안)

○ **총 규모는 전년 수준 유지, 최종 포상규모**는 후보자의 공적내용 심사 및 **행안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추후 확정**

< '26년도 포상규모(안) >

(단위: 점)

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장관표창
41	4	4	9	9	15

* 훈장(4점): 금탑 1점, 은탑 1점, 동탑 1점, 철탑 1점

4 포상수여: '26. 12월 중

* 노사문화大賞, 지역노사민정협력 유공 포상 시상식과 합동 개최

Ⅳ 포상자격 및 추천제한 기준

1 대상별 포상자격(추천마감일 기준)

○ **(노동자대표)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노동자대표*** 및 **지역노동단체의 노동자대표**

*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대표**(위원장, 지부장, 지회장, 분회장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조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와 **노사협의회 위원 중 근로자위원을 대표하는 자**〈초기업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이상 대표자는 제외〉

○ **(사용자)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사용자**(대표, 임원 등)

○ **(발전유공자) 학술·언론·문화·예술분야 등**에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자(학계·사회단체 등의 민간인 등)

2 추천방법

○ **(접수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노동기준조사(1)과에 아래 서류를 갖추어 추천

* 제출서류는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알림마당)에서 다운받아 작성

- **(제출서류)** 노사문화유공 포상추천서**[붙임1]** 및 구비서류 각 1부

* **[별지1~6]** ①사업체 개요서, ②포상후보자 공적조서, ③포상후보자 공적개요서, ④세부 공적내용, ⑤이력서, ⑥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

3 재포상 금지 기간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재포상 금지기간의 기산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국무총리)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4 포상 추천 제한 기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의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자**

○ **기타 추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

-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인 이상 추천된 경우 후순위자

  * 동일한 사업장 범위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 단위로 간주

-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최근 2회 연속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기업의 대표자**

  * 포상 추천일 이전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

- 고용노동부 주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이 확정된 후에 수상을 포기한 자(3년간 추천 제외)

V 포상후보자 추천 및 심사기준

1 포상후보자 추천

○ **지방청·대표지청**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문화유공 심사기준'**[붙임3]에 따라 심사한 후 **본부에 포상후보자를 추천**

○ **중소·민간분야** 노동자대표 및 사용자 등 **숨은 유공자 적극 발굴**

- 발전유공자의 경우 본부, 중노위에서도 발굴·추천

2 추천 시 제출서류

○ 노동자대표, 사용자 등이 지방관서에 제출한 서류 일체

- 노사문화유공 포상추천서**[붙임1]** 및 구비서류* 각 1부

  * [별지1~6] ①사업체 개요서, ②포상후보자 공적조서, ③포상후보자 공적개요서, ④세부공적내용, ⑤이력서, ⑥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경력은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체 재직기간을 포함하되 재직증명서, 4대보험 등을 통해 확인된 기간에 한정하여 기록하고 인정

○ 공적사항 조사의견서**[붙임2-1]**, 공적조사서**[붙임2-2]**, 포상후보자 추천 순위 및 심사점수표**[붙임4]**

3 추천 유의사항

○ 공적조서 및 공적개요서 작성 시 **개조식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공적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자세히 기술

- 계량적인 내용 없이 **추상적인 내용***을 단순 나열하는 방식 자제

  * (예시)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노사신뢰를 바탕으로 해결” (X)
    “노사합의로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23년 00명→’24년 00명)하여 ‘23년 대비 ’24년 주당 평균근로시간 0시간 감소” (O)

○ 공적내용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지실사를 통해 공적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타 **지역사회나 근무처의 평판** 등도 고려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배제

○ 추천 전 반드시 **본인의 포상훈격과 관계없이 수상의사 확인**

  * 포상자 확정 후 수상을 포기할 경우 3년간 포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전 고지

○ 범죄경력조회 등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을 것

○ 추천기관별 추천인원 및 추진일정 등 반드시 준수

4 심사기준

○ 공적기간(10) 및 **업적도(90)** **[붙임3 세부내용 참조]**

지표명	심사지표	배 점	측정방법
공적기간	당해 분야에 종사·경영한 경력의 년수	10	재직년수×0.5점
업적도	노·사 상생협력 실천 실적	40	심사자 점수부여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	20	
	차별 해소 관련 실적	20	
	사회공헌활동	10	
합 계		**100**	

VI 포상후보자 확정 및 포상실시

1 포상후보자 확정

○ 범죄경력 등 각종 조회 결과에 근거하여 포상제외자를 결정하고, 행안부 협의 등을 통해 포상규모 및 훈격 확정

○ **공적심사위원회(본부)**에서 대상자별 **훈격 및 추천순위 결정**

○ **포상후보자 추천 및 확정** (「2026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 포상 수여 예정일 90일 전 행정안전부와 포상규모 협의 개시 후 30일 전까지 포상 후보자 추천 →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최종 확정

2 포상 실시

○ 포상대상자 확정 후 별도 계획에 따라 **포상 및 전수**하고, 포상자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

Ⅶ 추진일정

내 용	추진일정	담당·유관기관
`26년도 포상계획 수립·시달	`26. 5월	고용노동부(본부)
포상계획 안내·홍보	`26. 5월~	고용노동부(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
포상후보자 추천서 접수	**`26. 6. 4. ~ 7. 10.**	고용노동부(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접수현황 보고	`26. 7. 13.	지방고용노동관서 → 청·대표지청 → 본부
공심위 개최 후 포상후보자 추천 (※ 접수서류 일체 메일로 송부)	`26. 7. 31.	청·대표지청/중노위 → 본부
공개검증 실시 (15일 간)	`26. 8. 5. ~ 8. 20.	고용노동부(본부)
결격사유 조회 등 - 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임금체불 공표 사업장, 세금체납, 범죄경력, 포상경력, 장애인고용 저조 공표 사업장, 공정거래법 위반 등 조회	`26. 8. 5. ~ 8. 20.  `26. 8. 5. ~ 8. 20.	고용노동부(본부) 소관 부처 및 담당부서
포상규모 협의 개시	`26. 9월 중순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 포상예정일 90일 전
포상후보자 선정 - 공적 정리 및 심사·평가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26. 10월 중	고용노동부(본부)
포상후보자 추천	`26. 10월 말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 포상예정일 30일 전
포상 실시	`26. 12월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포상 후보자 (피추천인)	성명(한자)				
	소속	업체명 (노조명)		직위	
		주소			
		이메일 주소			
	연락처(전화/**휴대폰**)				

추천인	성명			관계	(피추천인의)
	소속	업체명 (노조명)		직위	
		주소			
	연락처(전화/휴대폰)				

추 천 사 유

상기인을 노동자대표・사용자・일반유공자를 2026년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소속(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접수기관의 장 귀하

※ (구비서류) ①사업체 개요서, ②포상후보자 공적개요서, ③포상후보자 공적조서. ④포상후보자 공적내용, ⑤포상후보자 이력서, ⑥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구비서류 1〕

<table>
<tr><th colspan="3">사업체 개요서</th></tr>
<tr><td rowspan="10">소 속
사업체</td><td>사업체명</td><td></td></tr>
<tr><td>대 표 자</td><td></td></tr>
<tr><td>소 재 지</td><td></td></tr>
<tr><td>전화번호</td><td></td></tr>
<tr><td>규모(중소.대기업)</td><td></td></tr>
<tr><td>근로자 수</td><td></td></tr>
<tr><td>업종(생산품목)</td><td></td></tr>
<tr><td>설립일자</td><td></td></tr>
<tr><td>외투기업</td><td>유(국가명, 지분율) . 무</td></tr>
<tr><td rowspan="6">노 동
조 합</td><td>명 칭</td><td></td></tr>
<tr><td>상급단체</td><td></td></tr>
<tr><td>대 표 자</td><td></td></tr>
<tr><td>조합원수</td><td></td></tr>
<tr><td>설립일자</td><td></td></tr>
<tr><td>임<단>협 만료일</td><td></td></tr>
<tr><td colspan="2">노사분규 유무</td><td>년 (유.무), 년 (유.무), 년 (유.무)</td></tr>
<tr><td colspan="2">산재율(%)</td><td>년 (%), 년 (%), 년 (%)</td></tr>
<tr><td colspan="2">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현황(천원)
장애인고용부담금체납유무
장애인고용인원(명)</td><td>년 ( ), 년 ( ), 년 ( )
년 (유.무), 년 (유.무), 년 (유.무)
년 (명), 년 (명), 년 (명)</td></tr>
<tr><td colspan="2">고용보험료납부금액(천원)
고용보험료체납유무</td><td>년 ( ), 년 ( ), 년 ( )
년 (유.무), 년 (유.무), 년 (유.무)</td></tr>
<tr><td colspan="3">(사업체)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3">※ 작성요령
. 중소기업 범위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함
. 장애인고용 관련 사항 및 고용보험료 관련 사항은 최근 3년간 현황 기재</td></tr>
</table>

〔구비서류 2〕

포상후보자 공적조서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 천 훈 격	*작 성 불 요*	추 천 순 위	*작 성 불 요*
공 적 분 야	노사문화 유공	공 적 기 간	*00년 00월*

공적요지(70자 이내)

공적요지는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70자 이내로 작성** (글자 수는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확인함)

조 사 자(감독관)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직위 성명 직인
[(지)청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 요 경 력	
연 월 일	이 력 사 항
. . . ~ . .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고, 기간 및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재*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 · 포장 · 표창별로 기록)	
수 여 일 자(년 월 일)	포 상 종 류
. . .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훈격까지 정확히 기재*
. . .	
. . .	

공 적 내 용

- **공적 내용은 구체적으로 2,000자 이상 작성**
  (글자 수는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확인함)

-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과 관련된 근거자료로서 통계(수치)자료 포함할 것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 내용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구비서류 3〕

포상후보자 공적개요서

(포상대상:)

성 명 (연 령)	소 속 직 위 공적기간	생년월일 (성 별)	업종 (주생산품)	공적개요(예시)
홍 길 동 (만 55세)	000산업 생산팀장 26년 8월	00.00.00 (남)	제조업 (자동차 부품)	◉ (공적개요 및 당해 분야에 종사·경영한 경력) * 피추천인의 경력사항을 대표적 공적과 연계하여 총론적으로 기술 ■ 노·사 상생협력 실천으로 노사문화 정착 ㅇ 노사공동워크숍 매년 0회 개최, 산행대회 등 노사화합프로그램 운영으로 소통강화하여 '00년 이후 노사 무분규 달성 ㅇ 자녀학비 전액 지원, 직원 해외연수 등 직원 처우개선 ㅇ PC OFF제, 정시퇴근제 등 각종 제도를 실시하여, '00년 대비 '00년도 주당평균근로시간 00시간 감소 ㅇ고용유지협약('00.0.0.)을 통한 휴업, 휴직으로 고용안정 ㅇ ■ 좋은 일자리 창출 ㅇ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 여건 마련과 남성 육아휴직 보장 -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24년 0명→'25년 0명→'26년 0명) - 노사간 합의로 유연근무제를 개선하여 사용 확대 ('23년 0명 → '24년 00명 → '25년 00명 → '26년 현재 00명) ㅇ 여성리더쉽 교육 투자로 여성임원비율 증대('00년 00% →'00년 00%), 최근 0년간 여성근로자 00명 신규채용 ㅇ ■ 노사상생을 위한 차별해소 ㅇ 비정규직 차별해소(0000)와 정규직 전환 노력('00년 00명, '00년 00명, '00년 00명) ㅇ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해- '00년 사내하도급근로자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 (0% 이상 계약단가 인상) ㅇ ■ 사회공헌활동 * 기타 조직화합, 사회봉사, 가정관계 등 특이사항 기술 ㅇ ㅁㅁ기금 000만원 출연, 00년간 어린이 환우 후원(총 00만원), 지역 장학 사업 등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 뛰어난 분야별 공적사실 내용을 계량적으로 기술 **※ 심사 활용 자료이므로 충실히 작성할 것** ※ 가장 주요한 핵심공적을 한 단락 이상 포함하여 작성 ※ 동 양식에 맞추어 1페이지 분량이 맞도록 작성 (맑은고딕, 글자크기 11, 줄간격 130)

※ **(작성요령)** 포상대상란은 ''**노동자대표**', '**사용자**' 또는 '**발전유공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공적기간은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체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작성

〔구비서류 4〕

포상후보자의 세부공적내용

<공적내용> *(20매 이내, 2천자 이상)*

※ 작성요령

▲ 추진실적은 전체 20매 이내로 하되,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권장

▲ 주요 작성내용(심사지표 기준)

○ **당해 분야에 종사·경영한 경력의 년수**

(예: 근로자 및 노조간부, 사용자로서의 재직기간 등)

○ **노·사 상생협력 실천 실적**

- **경영·고용위기 극복 실천 사례,** 근로자 참여적 일터혁신 실적, 내실있는 노사협의회 운영실적, 노사협력프로그램 실시 실적,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성과창출형 생산적 노사문화 정착 노력, 임금체계 개편 노력

○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

- 연차휴가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한 노력정도, 근로시간단축 노력정도, 유연근무제 활용실적, 모성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적극 고용,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 **차별해소 관련 실적**

- 연령별·성별 차별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해소,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노력, 협력기업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 원·하청 및 대·중소기업 상생실천

○ **사회공헌활동**

- 봉사활동, 각종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

〔구비서류 5〕

포상후보자 이력서			
성명<한자>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기 관	사업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경 력 사 항			
년 월 일	경 력	년 월 일	경 력

〔구비서류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항 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고용노동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보유·이용기간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 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 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 제10조	영구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 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 제2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항목	제공근거	보유·이용기간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 제33조	기록부 : 영구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 제33조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붙임2]

공적사항 조사의견서

포상후보자 인적사항	성 명 (사업체명)		소속 및 직위 (대표자)	
	주 소 (직장소재지)		공적기간	

조사사항	조사결과
포상후보자의 공적조서 내용에 대하여 조사 실시	

종합의견

위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감독관)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3]

노사문화 유공 심사기준

지표명	심사지표	배 점 (세부배점)	측정방법
공적기간 (재직기간) (10)	○ **당해 분야에 종사·경영한 경력의 년수**	**10**	재직년수 × 0.5점 (최대 10점)
업적도 (90)	○ **노·사 상생협력 실천 실적**	**40**	심사자 점수부여
	- **경영위기, 고용위기 극복 실천 사례**		
	- 내실있는 노사협의회 운영실적		
	- 노사협력 프로그램* 실시 실적 * 일터혁신, 노사공동 워크숍, 노사관계진단 등		
	-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성과창출형 생산적 노사문화 정착 노력		
	- 근로자 참여적 일터혁신 실적		
	○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	**20**	심사자 점수부여
	- 연차휴가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한 노력 정도		
	- 근로시간 단축 노력 정도		
	- 유연근무제 활용 실적		
	- 모성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적극 고용		
	-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 **차별해소 관련 실적**	**20**	심사자 점수부여
	- 연령별·성별 차별없는 일자리환경 구축		
	-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해소		
	-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노력		
	- 협력기업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		
	- 원·하청 및 대·중소기업 상생실천		
	○ **사회공헌활동**	**10**	심사자 점수부여
	- 사회공헌활동 등		
합 계		**100**	

[붙임4]

포상후보자 추천순위 및 심사항목별 점수표

(추천분야 : 노동자대표 · 사용자 · 발전유공자)

추천기관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추천순위	성 명	소 속	직책	성별	공적기간 (년,월)	합계	공적기간 점수 (10)	공적 점수 (90)	비고 (포상이력, 물의야기 등)
1	*홍길동*	*㈜ 가나다*	*대표*	*남*	*5년 9월*	*78*	*8*	*70*	*노동절 장관표창('24)*
2									
3									
4									*언론보도 (25.3.2.)*
5									
6									
7									
8									
9									
10									

※ 추천분야(노동자대표, 사용자, 발전유공자)별로 별도 작성·제출 요망

[붙임5]

2026년도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 산업현장에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한 노동자대표 및 사용자, 발전유공자를 찾습니다.

◈ 포상대상

대 상	신청(추천)요건(2026. 7. 10. 현재)
노동자대표 사용자 발전유공자	· (노·사 대표) 노사협력 실천, 좋은 일자리 창출, 차별없는 좋은 일터 조성, 일·생활의 균형실현, 원·하청 상생, 고용유지 등을 위해 노사가 협력하여 선도적 역할을 한 노동자대표, 지역노동단체 대표 또는 사용자 · (발전유공자) 학술·언론·문화·예술분야 등에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자

◈ **포상내용**: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 포상별 최소 공적기간: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1년 이상

◈ **신청**(추천)**서류**: 추천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 **접수기간**: 2026. 6. 4.(목) ~ 7. 10.(금)

◈ **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노동기준조사(1)과

◈ **접수방법**: 접수처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작성요령 참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추진일정

◦ 공적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26년 12월 포상 실시 예정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2026년도 노사문화 유공 포상계획」, 포상 관련 법령 및 「202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도 노사문화 유공 포상계획과 신청(추천)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98),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노사상생지원과·노동기준조사(1)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고용노동청 · 대표(지)청 노사상생지원과·노동기준조사(1)과 연락처>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02-2250-5726
서울강남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02-3465-7367
서울동부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02-2142-8849
서울서부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02-2077-6103
서울남부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02-2639-2232
서울북부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02-950-9819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02-3282-9048
경기지방 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031-259-0347
의정부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031-850-7754
고양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031-931-2840
성남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031-788-1516
안양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031-463-7420
안산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031-412-1937
평택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031-646-1198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032-460-4572
인천북부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032-540-7956
부천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032-714-8746
강원지청(대표지청)	노동기준조사과	033-269-3553
강릉지청	노동기준조사과	033-650-2514
원주지청	노동기준조사과	033-769-0806
태백지청	노동기준조사팀	033-550-8623
영월출장소	노동기준조사팀	033-371-6236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051-850-6335
부산동부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051-559-6662
부산북부지청	노동기준조사과	051-309-1515
창원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055-239-6557
울산지청	노사상생지원과	052-228-1834
울산동부지청	노동기준조사과	052-259-3328
양산지청	노동기준조사과	055-370-0962
진주지청	노동기준조사과	055-760-6504
통영지청	노동기준조사과	055-650-1916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053-667-6267
대구서부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053-605-9067
포항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054-271-6746
구미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054-450-3522
영주지청	노동기준조사팀	054-639-1152
안동지청	노동기준조사팀	054-851-8033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062-975-6311
전주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063-240-3365
익산지청	노동기준조사과	063-839-0017
군산지청	노동기준조사과	063-450-0529
목포지청	노동기준조사과	061-280-0144
여수지청	노동기준조사과	061-650-0127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064-728-7112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042-480-6255
청주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043-299-1159
천안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041-560-2885
충주지청	노동기준조사과	043-840-4067
보령지청	노동기준조사과	041-930-6126
서산지청	노동기준조사팀	041-661-5646